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1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찬성자 9명)
-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8월 28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한아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명예시장제도가 계획과 달리 이들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저조한 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시장들의 의무와 해촉 사유를 강화하고 활동이 우수할 경우 포상하도록 규정함.

나. 주요내용

- 가. 명예시장을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모집 함(안 제5조제4항).
- 나.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

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촉하도록 함(안 제7조제4호).

라.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포상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분야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정에 참여 및 활동하고 있는 명예시장 제도가 계획과 달리 이들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저조한 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시장들의 정책제안 활동을 강화하고 해촉 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항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임.
- 안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제4항 역시 ‘명예시장을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명예시장은 제5조제2항에서 ‘시민과 분야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추천을 받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모집(붙임 1)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역대 명예시장 시민/부서 추천 현황(붙임 2)’에 따르면 시민추천(6명/18%)보다 부서추천(28명, 82%)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모집만으로는 각 분야별 대표성 및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 어렵고 분야별 대표성이 검증된 공신력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부서추천이 많다는 부서 의견이 있었음.

- 안 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제4항은 명예시장이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하도록 신설하는 규정으로

명예시장은 소관부서와 위원회, 각종 자문회의 및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주요 행사 및 시설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

★ 활동실적('16.10.~'19.6) : 총 2,159회

- 회의 및 토론 1,205회, 행사 553회, 현장점검 및 심사 145회, 기타 256회
- ※ 94건(2016년), 743건(2017년), 716건(2018년), 606건(2019.1~6월)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현행 조례 제3조1)에 따라 정책제안 뿐

1) 제3조(임무)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정의 참여
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

아니라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시민과의 소통활동이며, <표 1>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각 분야별 명예시장들의 제안 및 건의 실적(붙임 3)에 편차가 있으므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최소 분기별 1건을 제안하도록 함.

<표1>. 제안 및 건의실적 : 평균 회의당 11건, 연간 1인당 5건

연도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1~6월)
제안 및 건의 (회의 개최)	267건 (23회)	12건 (1회)	86건 (9회)	94건 (7회)	75건 (6회)

※ 공통, 단순 제안 및 일반 건의 포함

- 안 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제4호는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시 분야별 소관부서와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경력회보발급시스템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조회를 하고 있으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시민들의 정책제언이나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접목하고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촉된 명예시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들과 대면한다는 점과 이들의 차후 경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격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

4.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로서 제6의3호 및 제6의4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²⁾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바, 성범죄자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와 명예시장은 일반시민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명예시장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명예시장의 해촉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포상)는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임기만료된 명예시장에게 서울시에서 표창(감사패)을 수여(붙임 4)하고 있고 명예시장에 대해 시민의 가교 역할로서 소통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감사로 포상을 명문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1. 명예시장 추천 공고>

서울시 명예시장 추천 안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생생한 시민의견을 청취·수렴·전달 할 서울시 『명예시장』을 모시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 추천 개요

- 추천기간 : '19. 2. 22.(금)~3.13.(수) / 20일간
- 추천분야 : 3개 분야(일자리노동, 소상공인, 청년)
- 자격요건

분 야	추천 대상자 자격	관련부서
일자리노동인	▶ 일자리노동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 수렴 등이 가능한 사람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소 상 공 인	▶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제안이 가능한 사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청 년	▶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청년당사자로서 전문성을 지니고 현장의견 수렴과 다양한 정책제안이 가능하며 민주적 소통자세를 갖춘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서울시 청년 대상 사업 및 국회 계류 법안의 넓은 범주 준용)	청 년 청

○ 임기 및 활동

- 임 기 : 1년(1회, 1년 연임가능)
- 주요활동
 - ▶ 정례회의 및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 및 분야별 의견 교환
 - ▶ 시민의견 수렴 활동(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등)
 - ▶ 서울시정 관련 주요행사, 간담회 및 회의 참석 의견 제시 등

○ 추천방법 :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신청

※ 1인당 1명만 추천 가능

○ 서울시 홈페이지 명예시장 모집공고 게시 이미지

서울시 명예시장 추천 안내 수정일 | 2019-02-26

일자리노동인·소상공인·청년 3개 분야

서울시 명예시장 추천 안내

기간 | 2019. 2. 22(금) ~ 3.13(수)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생생한 시민의견을 청취·수렴·전달 할 서울시 '명예시장' 을 모시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 추천기간**
'19. 2.22.(금)~3.13.(수) / 20일간
- 추천분야**
3개 분야(일자리노동인, 소상공인, 청년)
- 자격요건**

분야	추천 대상자 자격	관련부서
일자리노동인	- 일자리노동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다양한 경제계인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한 사람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제안이 가능한 사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청년	- 청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청년당사자로서 전문성을 지니고 현장의견 수렴과 다양한 정책 제안이 가능하며, 인주력 소통자세를 갖춘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서울시 청년 대상 사업 및 국회 계류 법안의 넓은 범주 준용)	청년청

- 임기 및 활동**
- 임 기 : 1년(1회), 1년 연임가능)
- 주요활동
· 경제회의 및 온라인 등을 통한 시장 및 분야별 의견 교환
· 시민의견 수렴 활동(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등)
· 서울시정 관련 주요행사, 간담회 및 회의참석 의견 제시 등
- 추천방법**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신청
※ 1인당 1명만 추천 가능
- 최종선정자 발표**
'19.4.12(금)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예정)

@
f
+
o
o
o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현장소통팀 문의 | 02-2133-6419 작성일 : | 2019-02-22

일자리노동 명예시장 등 3개분야 모집공고 (2019. 2.22.)

서울시 명예시장 추천 안내(소상공인 분야) 수정일 | 2019-04-25

소상공인 분야

서울시 명예시장 추천 안내

기간 | 2019. 4. 23.(화) ~ 5. 2.(목)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생생한 시민의견을 청취·수렴·전달 할 서울시 '명예시장' 을 모시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 추천기간**
'19. 4. 23.(화) ~ 5. 2.(목) / 10일간
- 추천분야**
소상공인 분야
- 자격요건**

분야	추천 대상자 자격	관련부서
소상공인	- 전통시장 외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제안이 가능한 사람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임기 및 활동**
- 임 기 : 1년(1회), 1년 연임가능)
- 주요활동
· 경제회의 및 온라인 등을 통한 시장 및 소상공인 분야 의견 교환
· 시민의견 수렴 활동(소상공인 분야 현장의견 수렴 등)
· 서울시정 관련 주요행사, 간담회 및 회의참석 의견 제시 등
- 추천방법**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신청
- 최종선정자 발표**
'19. 5. 24(금)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게시(예정)

@
f
+
o
o
o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현장소통팀 문의 | 02-2133-6419 작성일 : | 2019-04-23

소상공인분야 명예시장 모집 재 공고 (2019. 4.23.)

<붙임 2. 역대 명예시장 시민/부서 추천여부 현황>

연번	분 야	성 명	시민/부서 추천여부	활 동 기 간
1	어르신	한 창 규	시민 추천	'16.10.27~'18.10.26
2	장애인	남 산	부서 추천	"
3	여성	이 현 주	부서 추천	"
4	아동	김 인 하	부서 추천	"
5	외국인	원 옥 금	부서 추천	"
6	관광인	정 하 용	부서 추천	"
7	문화예술인	김 정 현	부서 추천	"
8	환경인	남 미 정	부서 추천	"
9	중소기업인	김 형 태	부서 추천	"
10	전통상인	서 정 태	시민 추천	"
11	청소년	서 은 송	부서 추천	"
12	시민건강인	이 승 욱	부서 추천	"
13	도시안전인	이 태 식	부서 추천	"
14	도시재생인	김 기 호	부서 추천	"
15	청년	김 희 성	시민 추천	'17.4.12~'19.4.11
16	일자리노동	이 원 보	부서 추천	"
17	소상공인	정 인 대	시민 추천	"
18	어 르 신	고 영 재	부서 추천	'18.12.4~ 현재
19	문화예술인	안 숙 선	부서 추천	"
20	시민건강인	김 소 선	부서 추천	"
21	중소기업인	맹 부 열	부서 추천	"
22	도시재생인	이 충 기	부서 추천	"
23	환 경 인	지 영 선	부서 추천	"
24	여 성	김 은 희	부서 추천	"
25	관 광 인	양 무 승	부서 추천	"
26	도시안전인	안 종 주	부서 추천	"
27	전통상인	김 정 안	부서 추천	"
28	장 애 인	안 진 환	시민 추천	"
29	외 국 인	포포바 에카테리나	부서 추천	"
30	청 소 년	심 레 오	시민 추천	"
31	아 동	윤 주 영	부서 추천	"
32	일자리노동	임 상 혁	부서 추천	'19.4.25~현재
33	청 년	이 상 업	부서 추천	"
34	소상공인	이 재 광	부서 추천	'19.5.29~ 현재

<붙임 3. 명예시장 정책 제안 및 건의 실적 현황>

○ 제안 및 건의실적 : 총 267회('16.10.27.~'19.6.30.)

연번	분야별	합계	2016년 (회의 1회)	2017년 (회의 9회)	2018년 (회의 7회)	2019년 (회의 6회)
계	17개 분야	267	12	86	94	75
1	어 르 신	14	1	6	4	3
2	일자리노동	11	0	2	5	4
3	문화예술인	10	1	7	0	2
4	시민건강인	13	0	3	5	5
5	중소기업인	20	0	11	7	2
6	도시재생인	18	0	5	7	6
7	소상공인	5	0	0	3	2
8	환경인	21	1	4	14	2
9	여성	9	2	1	3	3
10	관광인	25	1	9	11	4
11	도시안전인	19	1	8	7	3
12	전통상인	21	1	9	4	7
13	장애인	26	1	4	5	16
14	외국인	22	1	7	10	4
15	청년	10	0	0	7	3
16	청소년	13	1	6	2	4
17	아동	10	1	4	0	5

※ 공통, 단순 제안 및 일반 건의 포함

<붙임 4. 명예시장 표창 현황>

연번	분 야	성 명	표창 훈격	표창일
1	어르신	한 창 규	시장표창(감사패)	2018.10.26.
2	장애인	남 산	"	"
3	여성	이 현 주	"	"
4	아동	김 인 하	"	"
5	외국인	원 옥 금	"	"
6	관광인	정 하 용	"	"
7	문화예술인	김 정 현	"	"
8	환경인	남 미 정	"	"
9	중소기업인	김 형 태	"	"
10	전통상인	서 정 래	"	"
11	청소년	서 은 송	"	"
12	시민건강인	이 승 욱	"	"
13	도시안전인	이 태 식	"	"
14	도시재생인	김 기 호	"	"
15	청 년	김 희 성	"	2019. 4.25.
16	일자리노동	이 원 보	"	"
17	소상공인	정 인 대	"	"

4. 질의 및 답변요지

문 : 제로페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대관료를 할인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원상회복된다는 뜻인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격이 인상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것은 민원으로 이어질 것임.

답 : 필요 시 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문 : 제로페이 모집을 위해 자치구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자치구별 경쟁을 시켜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답 : 해당 부서에 의견 전달하겠음.

문 : 시민청 대관료는 제로페이로 결제하여도 크게 감면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의문임. 제로페이 목적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므로, 제로페이만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답 : 해당 부서에 의견 전달하겠음.

문 : 경상남도의 경우 「경상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대한 조례」가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임. 서울시는 조례개정 이후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인 바, 7개월의 감면기간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에도 짧다고 생각함.

답 : 조례 개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연말까지 효과를 파악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겠음.

문 : 제로페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사용법을 모르는 것임. 이에 시스템 개선이 우선시 되어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함.

답 : 해당 부서에 의견 전달하겠음.

문 : 제로페이 사용법이나 제도에 관해 시민소통기획관부터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음. 서울시 홍보부서인 시민소통기획관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어느 자리에서든 제로페이에 대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함.

답 : 제로페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41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 (1명)

찬 성 자 : 김화숙, 이승미, 김제리,
고병국, 김춘례, 이병도,
임종국, 경만선, 노승재
의원 (9명)

1. 제안이유

시책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명예시장제도가 계획과 달리 이들의 정책 제안 활동이 저조한 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시장들의 의무와 해촉 사유를 강화하고 활동이 우수할 경우 포상하도록 규정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예시장을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공개모집 함(안 제5조제4항).

나.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해촉하도록 함(안 제7조제4호).

라.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포상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지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략)</p> <p>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⑦(생략)</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 <p>⑦(현행과 같음)</p>
<p>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②(생략)</p> <p>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②(현행과 같음)</p> <p>③ -----, 한 번만 -----.</p> <p>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p>
<p>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 ③(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p>
<p>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1. ~ 3.(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4. (생략)</p>	<p>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1. ~ 3.(현행과 같음)</p> <p>4. <u>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u></p> <p>5. (현행 4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제11조(포상) 시장은 시민과 소통, 탁월한 정책 제안으로 서울시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p>